

1 단계평가 관련

**Q1-1. 1차 절대평가 지표 중 '연구개발의 수행 내용 및 과정의 성실성' 항목에서 계획 대비 실적은 정량적 성과목표인가요?**

A.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 제16조(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)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에 제시한 목표 및 내용과 연구개발과정까지 함께 평가하는 것으로, 1단계 목표 및 연차별 수행계획 등을 평가할 예정입니다.  
(※ 평가지표 확인)

**Q1-2. 단계평가 진행시 발표평가가 예정되어 있는지, 있다면 오프라인으로 발표를 진행하게 되는지요?**

A. (1차평가) 절대평가 : 발표 25분, 질의응답 25분  
(2차평가) 상대·비교평가 : 발표 10분, 질의응답 15분  
발표는 대면평가를 계획하고 있으나, 코로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  
(※ 기관별 상세 일정은 추후 안내 예정)

**Q1-3. 연구개발성과 소유 합의 관련, 합의 도출 시기가 과제 종료 시점인지, 단계평가 종료 시점까지인지요?**

A. 연구개발 초기 단계에 사전 협의를 완료해두는 것을 권장합니다.  
[첨부6] 기술개발사업 연계형 상세로드맵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현시점에서 사전논의가 필요하고, 그 결과가 반영되어야 합니다.  
([www.kmdf.org](http://www.kmdf.org) - 알림마당 - 규정 및 양식 - 연구개발성과 소유 가이드라인) 참고

**Q1-4. 단계평가 시, 과제 기술분야별로 평가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'사업화' 등 평가지표가 달라서 불리한 경우가 생기지 않지요?**

A. 과제 유형별로 (품목지정형, 조기성과창출형, 선도기술개발형) 분과를 구성하여 동일 유형, 지표로 단계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.

## 2 단계보고서 제출 관련

**Q2-1. 연구수행이 2월 말 종료인데, 단계보고서 접수는 12월 31일까지입니다. 보고서 접수 이후에 나오는 추가 성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?**

A. 단계보고서 접수 마감일('21.12.31) 이후 도출될 성과, 연구개발내용 등은 단계보고서 내 '4. 목표 미달 시 원인분석' 항목에 '추후 증빙예정'을 명시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 이는 연구수행 종료일('22.2.28)까지의 성과만 해당하며, 추후 증빙이 불가능할 시 제재조치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.

**Q2-2. 정량적 성과목표 항목 중 연구개발계획서 제출시에 계획하지는 않았으나, 성과가 창출된 항목이 있을 경우 추가 기재 가능한가요?**

A. 가능합니다. 연구개발계획서에 계획되지 않은 내용이나 성과가 추가로 창출되었을 경우, 평가 시 목표 초과 달성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.

**Q2-3. 3차 추가예산 배분 평가 관련, '연구개발비 추가지원 요청서' 작성시 요청할 수 있는 지원금액 최대 한도가 있는지요?**

A. 기관이 신청한 추가지원 금액을 3차 평가위원회에서 검토\*하여 예산 조정이 이루어집니다. 평가 결과에 따라 증액/감액/지원제외로 결정됩니다.

\* 사업 추진계획의 명확성, 연구개발비 증액의 타당성 등

(※ 추가 증액 금액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추후 안내)

## Q2-4. 단계보고서 작성, 제출 요령이 있으시나요?

A. 단계보고서는 두가지\* 양식이 있으며, 두개 파일을 조합하여 업로드\*\* 해주셔야 합니다.

\* 사업단에서 이메일로 송부한 양식(단계보고서<sup>e-mail</sup>)과 IRIS에서 다운로드 받는 양식(단계보고서<sup>IRIS</sup>)

\*\* e-mail로 받은 보고서양식에 직접 작성 부분을 기재하고, IRIS에서 다운받은 양식의 자동 입력부분을 복사하여 e-mail 양식에 붙여넣음, 이후 업로드



(※ 단계보고서 내 작성요령 참고)

## 3 기술개발사업 연계형 상세 로드맵 작성 관련

Q3-1. 2단계 연구개발기간중 기술개발부분(혹은 인허가, 임상시험)이 계획되어 있지 않다면, 해당 부분을 어떻게 처리 하시나요?

A. 로드맵은 최대한 자세하게 작성해주시되,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(기술개발, 인허가, 임상시험 등)은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